

'22년 산재예방시설 용자지원 사업 개시 안내

○ 지역 : 강서구, 양천구, 영등포구, 구로구, 금천구, 관악구, 동작구

1. 신청기간 : '22. 1. 3.(월), 09:00부터(재원소진 시 까지)

2. 신청방법 : 방문 또는 우편접수(코로나 19로 인한 방문접수 지양)

○ 우편접수 주소 : (07254)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길 8, 8층
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 지역2부

3. 지원대상

- 1)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(300인 미만 우선지원)
- 2)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(고용노동부 승인)

☞ 지원제외 대상('22년 사업계획 추진지침에 따라 변경 시에는 재공지)

1. 용자신청 이후 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
 2. 용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 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
 3. 당해연도 보조금 결정 사업장(단, 당해연도 안전투자혁신사업 위험공정개선 보조결정 사업장*은 제외)
- * 안전투자혁신사업 보조금 결정 이후 잔여금에 대한 용자 신청(세부사항 향후 공지)

4. 지원금액 : 사업장당 10억원 한도(기 지원 용자금 상환 시 추가 지원)

5. 지원조건 : 고정 연리 1.5%,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

6. 주요 지원품목

- 1) 유해 또는 위험 기계·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
※ 주요설비명: CNC 머시닝센터, NC 밀링, 크레인, 사출성형기, 산업용 로봇 등
- 2) 유해 또는 위험 기계·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조치
- 3)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이행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장비
- 4)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

7. 우선지원 선정기준 및 결정기준 : 첨부 1 참조

○ 선정기준점수가 40점 미만인 사업장은 하반기에 재원범위 이내 결정
- 지원신청금액 합계가 월별 예산배정액 초과 시 우선지원 선정기준 적용하여
고득점 순으로 배정액 이내 우선 결정

* 선정기준점수가 60점 이상인 사업장은 월별 배정액을 초과하더라도 우선 지원

8. 문의처 : 지역2부 02-6924-8742

9. 제출서류 : 첨부 2 참조

[첨부 1] '22년도 융자금 지원대상자 우선지원 선정기준

선 정 항 목	항목별 가중치	비 고
■ 공통적용 항목	100점	
① 투자공정의 유해·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- 제조업 끼임·추락 고위험 3대업종(중업종 기준)* 등 안전투자혁신사업 위험공정개선 지원사업장 * ①기계기구·금속·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, ②화학및 고무제품제조업, ③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 - 일선기관별 융자금 지원사업 연계율 등을 고려한 재해율 상위 10개 업종(제조업, 서비스업 소업종 기준)	20점	재해율 통계: 지역별 300인 미만 (확정통계 사용)
② 시설 및 장비 개선이 요구되는 사업장 - 고용노동부·공단 또는 민간재해예방단체의 감독·점검, 기술지원결과에 따라 개선지적을 받은 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 -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	20점	
③ 사망사고 감소 사업 참여 사업장 [패트론펜,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(위험성평가 인정)] '21년~'22년 기술지도 사업장	20점	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유효기간 동안 융자금 신청 시 점수 부여
④ 「법 제80조, 제84조, 제89조 및 영 제70조, 제74조, 제77조」 또는 「법 제85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14조」에 따라 유해·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·기구(영 별표20) 또는 안전인증·자율 안전확인 및 S마크를 받은 제품을 구입하거나 제작하는 사업장	15점	영 [별표20] 기계·기구 예초기, 원심기, 공기압축기, 금속절단기, 지게차, 포장 기계
⑤ 5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	5점	관련서류 제출 시 인정
⑥ 고용증가 사업장 신청 전 1년 근로자수 비교	5점	
⑦ 산재장해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(해당 근로자 1명당 1점, 최대 5명 인정) 근로계약서, 산재장해보상금 지급확인서 등 확인	5점	산재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보상금을 수급한자를 고용 하고 있는 경우
⑧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기업 선정 또는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* * ①노사문화 우수기업, ②NCS컨설팅 우수사례 선정기업, ③장애인고용 우수 사업주기업, ④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, ⑤노사문화 대상기업 - 해당사항 1개 이상인 경우, 가중치 5점 적용	5점	인정서 및 대상명단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인정
⑨ 공생협력 참여한 협력업체 '21년~'22년 공생협력 참여 협력업체	5점	
계	100점	
■ (가점)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율 항목 - 제조업, 서비스업 재해자수 상위 10개 소업종 * ①번 해당업종 제외	(가점) 20점	재해자 통계 : 300인 미만 (확정통계 사용)

- ※ 선정기준 점수가 동일할 경우 공통적용 항목 순번 → 자율 항목 순으로 항목별 우선순위 적용
- ※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결정 사업장은 당해연도 융자금 지원결정 불가(단, 안전투자 혁신사업 위험공정개선 보조지원 사업장 제외)

○ 재해율 상위 10개 업종(제조업, 서비스업) - ① 항목 적용 업종

NO	소업종명
1	[21005] 연탄및응집고체연료생산업
2	[20403] 목재가구제조업
3	[20001] 육제품또는유제품제조업
4	[20404] 기타목재및목제품제조업
5	[20002] 야채및과실의통조림과기타절임식료품제조업
6	[20006] 도정및제분업
7	[20010] 기타식료품제조업
8	[90102] 위생및유사서비스업
9	[20003] 수산식료품제조업
10	[90103] 하수도업

○ 재해자 상위 10개 업종 - 가점 항목 적용 업종

NO	제조업 소업종명
1	[20205] 의복및장신품등의제조업
2	[20604] 인쇄업
3	[22404]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
4	[20603] 출판업및음반제조업
5	[22409] 의료기계기구제조업
6	[20209] 기타섬유제품제조업
7	[22405] 전자관또는반도체소자제조업
8	[20606] 제본또는인쇄물가공업
9	[20004] 빵및과자류제조업
10	[22408] 통신기계기구또는이에관련한기계기구제조업

NO	서비스업 소업종명
1	[91002] 음식및숙박업
2	[91001]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
3	[90101]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
4	[90714] 보건및사회복지사업
5	[90104] 사업서비스업
6	[91301]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사업
7	[90716] 오락·문화및운동관련사업
8	[90715] 교육서비스업
9	[90515] 건설업본사
10	[90504] 개인및가사서비스업